

2025

소방관계법규8 초고층재난관리법

엠북 소방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고난도 문제 대비, 고득점용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
- ◆ 25년 2월 법령 개정내용 반영
- ◆ 40분 완성, 암기코드 제공

초고층재난관리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4)

제2장 예방 및 대비(p13)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p62)

제4장 보칙(p68)

제5장 벌칙(p72~77)

[약어]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구등은 시군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시군구

부령은 행정안전부령

청장은 소방청장

서장은 소방서장

위원회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초고층등은 초고층 건축물등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방법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5조

1. 목적

가) 법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주변지역 재난관리를 위해
- 재난 예방/대비/대응/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해
-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이바지

나) 시행령(대통령령)은 법, 시행규칙(부령)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

가.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 지하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모두 구비

a) 11층 이상 또는 건축물 용도/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수용인원 5천명

이상

- 지상층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산정한 재실자 수를 수용인원으로 봄

b) 건축물 내 문화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유원 시설이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하나

이상

2) 화재시 열/연기 배출이 쉽고 다음 모두 갖춘 때 제외

- 건축물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 입구 간,

a) 10m 이상

- 입구가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입구 간 거리 기준

b) 벽은 내화구조

c) 다음 모두 갖춘 바닥 수평투영면적 180 이상인 공간 확보

- 피난, 열/연기 배출이 쉽게 측면이나 상부

중 개방 부분 면적이 바닥 부분

수평투영면적의 1/2 이상

- 옥외 피난 계단/경사로 설치시 유효너비

1.8m 이상

-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화단 등 구조물

부분은 면적 산정시 제외

다. 관계지역

1) 초고층등과 주변을 포함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수습에 필요한 다음 지역

a) 초고층등이 있는 대지

b) 초고층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시군구등이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 둘 이상 지자체에 걸친 때 시군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는 청장이 지정/고시

2) 관계지역 지정/고시시 시군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청장에,
시도지사는 청장에 통보

라. 일반건축물등

- 관계지역 내 초고층등 제외한 건축물,
시설물

마. 관리주체

- 초고층등이나 일반건축물등 소유자, 관리자

- 건축물등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 진 자 포함

(참고) 본 교재에서 관리주체는 별도

명시없으면 초고층등 관리주체

바. 관계인

- 초고층등이나 일반건축물등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 총괄재난관리자

- 초고층등 재난, 안전관리 총괄